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No-6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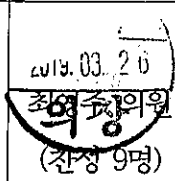
2019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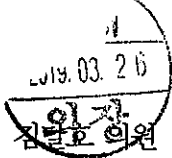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원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발의·제출일
1 (482)	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,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'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'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'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', '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	송아량 의원 (찬성 11명) (교통)	2019. 3. 22.
2 (483)	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은 정관의 규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를 상위 조례로 명기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,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, 시장 추천 3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	 최현주 의원 (찬성 9명) (문화체육관광)	2019. 3. 22.
3 (484)	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 추천 3명,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3명으로 하고자 함	박기재 의원 (찬성 9명) (기획경제)	2019. 3. 22.
4 (485)	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 및 서울시민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었으나,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-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	박기재 의원 (찬성 11명) (환경수자원)	2019. 3. 22.

5 (486)	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관에 근거한 '임원추천위원회'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,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,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함	김호진 의원 (찬성 11명) (문화체육관광)	2019. 3. 22.
6 (487)	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청 및 교육감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 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	김용연 의원 (찬성 16명) (교육)	2019. 3. 22.
7 (488)	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 중 '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'라는 문구는 '장애가' '직무수행'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'장애'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-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하게 함 -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	김달호 의원 외 9명 (행정자치)	2019. 3. 25.
8 (489)	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'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'라는 문구는 '장애가' '직무수행'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'장애'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,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고자 함 -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	 김달호 의원 외 9명 (기획경제)	2019. 3. 25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관련 의안 1부. 끝.